

공정위, 공정거래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추진키로

본 협회 조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대한 정·재계 합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8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다. 그리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을 개정(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을 제정(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지난 6월 22일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 관련 법안 제·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보완에 관한 정부·재계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지주회사제도 등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작성, 입법예고를 하였다.

1)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 등과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①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예외 인정 시한을 당초 2001년 3월 31일에서 2003년 3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②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대상이던 SOC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를 적용제외 대상으로 전환,

③ 법정관리 또는 화의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신설, ④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한도 초과 출자해소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단, 계열 분리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집단의 해소 유예기간은 현행대로 1년간으로 함), ⑤ 30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대폭 완화 등이다.

2) 규제완화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사항

지주회사제도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사항으로는 ① 회사정리·화의중인 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의무를 동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동안에는 유예하여 주고, ② 자회사의 주식가액 상승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부채비율 100%요건 등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를 1~2년간 유예하여 주며, ③ 과징금 납부기간 연장 또는 신청기간을 조정해 주는 것 등이다.

※ 동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월간 공정경쟁 제72호 참조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을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을 제정(안)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통신판매의 일종으로 규제하고 있는 전자거래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동 법률 중 통신판매 관련 규정을 보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법”)을 제정하고, 현행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부분 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화권유판매를 방문판매에 준하도록 하고 전화권유판매자 및 계속거래업자를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②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조건 없는 청약철회기간을 14일로 통일하여 규정하였으며, ③ 전자상거래소비자법에서는 권리·의무 관련 전자문서 사용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거래 관련 기록보존의무 및 열람에 제공할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④ 동 법률안은 결제사업자·배송업자 등의 책임성 및 개인 정보의 보호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법 모두 기준약관제도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⑥ 다단계판매원 모집시 정보제공의무를 정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판매업자의 책임을 규정,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으며, ⑦ 법률운용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시·도지사는 시정권고), 시정조치에 앞서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같은 효력을 부여토록 하는 것 등이다.

※ 자세한 부분은 월간 공정경쟁 제72호 FOCUS(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 이성구 과장) 참조

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을 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전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아울러 가맹사업 당사자들의 건실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간의 건전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이 준수해야 할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②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에게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내역 등의 가맹사업과 관련

된 주요사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③ 가맹본부가 매회계년도말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갱신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서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수정하도록 하였고, ④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에 의하여 가맹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는 반환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 등 금전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고, ⑥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⑦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사업장의 몰수 등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사항위반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문서로써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⑧ 가맹사업 당사자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⑨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된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상담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⑩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행위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장도록 하였다.

※ 동 법률(안)의 전문은 본지의 '부록' (83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시행령상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상의 직접지급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직접지급사유 중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분리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직접지급사유를 확대하여 중·소 하도급자의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토록 하였다.

※ 동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본지의 '부록' (91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5. 할부거래에관한법을 개정 추진

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1991. 12. 31. 제정, 이하 “할부거래법”)은 소비자의 권리보장과 할부판매자의 각종 기만적 행위에 대한 억제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비자가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점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철회권 배제사항을 구체화하였고, ②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할부계약이 무효·불성립된 경우에는 신용제공자가 기 지급한 할부금까지 환급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주의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소비자의 항변권을 확대하였으며, ③ 할부판매자가 허위·과장 및 기만을 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할부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할부판매자가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 소비자피해를 초래하는 할부판매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④ 할부판매자의 금지행위, 할부거래의 표시, 할부계약의 서면주의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및 양벌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였으며, ⑤ 할부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1년의 단기로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할부거래의 불확정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⑥ 할부계약서상에 소비자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 할부판매자·소비자·신용제공자의 상호,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직접할부계약시 매월 변제일을 새로이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규정하였으며, ⑦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일시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⑧ 기타, 할부거래법 전체적으로 매도인을 “할부판매자”, 매수인을 “소비자”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할부거래법이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을 명확히 하였다. **공정**